

3. 가족돌봄휴직

가. 근거

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9호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5조제1항제8호,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9조의4

나. 휴직사유

- 1) 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. 다만,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.
- 2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9조의4)
 - 가)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: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, 다만,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, 고령, 장애 또는 미성년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
 - 나)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: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. 다만,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, 고령,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

다. 휴직의 요건

- 1) 휴직 대상: 남·여 교육공무원
 - ※ 부양 및 돌봄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
- 2) 부양 및 돌봄대상자의 범위: 조부모, 부모, 배우자(배우자의 부모 포함), 자녀 또는 손자녀
 - 가) 부모 및 자녀(또는 손자녀)에는 친부모·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양부모·양자녀도 포함.(단, 양부모·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 - 나) 이혼한 교육공무원에게 대상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
 - 다)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
 - 라)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

라. 휴직기간 및 횟수

- 1) 법정휴직기간: 1년 이내(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)
- 2) 휴직의 신청,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

○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1인에 대하여

- 가)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, 휴직종료일은 학기말임
(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적극 권장)
 - 나) 휴직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니,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·복직을 허가하되,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말에 맞춤
 - 다)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 중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함
- 복직과 동시에 부양 및 돌봄 대상자를 달리하여 가족돌봄휴직 가능
 - 학기단위의 의미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·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임(다만, 타교복직자의 경우 인사발령상 3월 1일~8월 31일, 9월 1일~2월 말일로 적용)